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정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3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신정호, 강대호, 강동길,
경만선, 김경우, 김기대,
김용석, 김인제, 김정환,
김제리, 김종무, 김태수,
김평남, 노식래, 문장길,
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
서윤기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양민규, 유정희,
이광성, 이상훈, 이영실,
이정인, 이준형, 이호대,
임만균, 임종국, 장상기,
전병주, 전석기, 채유미,
최 선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·불량건축물 비율을 완화하여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·불량건축물 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, 「소규모주택 정비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관리지역 내 노후·불량건축물의 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57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) ①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영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관리지역 내 노후·불량건축물의 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57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